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고객홍보실 고객서비스부

제정 2023. 3. 21. 규정 제47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 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에 따라 청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청원 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청원심의회 구성

제4조(청원심의회 원칙)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은 심사평가원 업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내부위원은 주관부서의 장과 「직제규정」에 따라 법규·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의 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 업무 담당 3급 직원으로 한다.

제7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원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하려면 위촉 전에 그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청원심의회 운영

제11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청원이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회 서면의결서에 따라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간사는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규정 475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청원에 대해 이 규정 시행 이후 심의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성 명 : (서명)

| 연번 | 진단내용 | 체크사항 | |
|----|--|----------|------------|
| 1 | 심의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아니오 () |
| 2 | 심의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예 () | 아니오 () |
| 3 | 심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예 () | 아니오 () |
| 4 | 심의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예 () | 아니오 () |
| 5 | 심의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윤리 서약서

직 위 : 청원심의회 위원

성 명 :

상기 본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원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직에서 해촉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의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심의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4.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5. 심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6. 심의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7. 그 밖에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 | | |
|--|------------------------|--|
| 부서명 | | |
| 청원사항 | 청원명 | |
| | 청원인 | |
| | 청원요지 | |
| 요구사유 | | |
| 검토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 |
| <p>「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원심의회 귀중</p> | | |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 | |
|---------|-------|
| 안 건 | |
| 일 시 | 년 월 일 |
| 심의의견 | |
| 검 토 의 견 | |
| | |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원심의회 서면의결서

의안명: (청원접수번호 - -)

의결주문:

제안사유:

위 의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아래의 해당란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위원장 (인) | 위원장 (인) |
| 위원 (인) | 위원 (인) |
| 위원 (인) | 위원 (인) |
| 위원 (인) | 위원 (인) |
| 위원 (인) | 위원 (인) |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 |
|------------|-----------------|
| 안 건 | |
| 일 시 | 년 월 일 |
| 심 의 결 과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원심의회 위원 >

| 구 분 | 성 명 | 심 의 의 견 | | | 서 명 |
|-----|-----|-----------------|-----------------|----|-----|
| | | 찬성 (심의결과 동의) | 반대 (심의결과 반대) | 비고 | |
| 위원장 |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